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함을 명확히 규정
-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 2) 부실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3)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를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로 한다.

제42조 제3호에서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 제2항제2호에서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를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 하며 다음 각 목을 신설한다.

가.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제70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장 및 제8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3-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를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로 하며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으로 한다.

라목을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로 하며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한다.

“마.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를 신설하며 제한기간은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으로 한다.

“바.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붕괴를 야기한 자”를 신설하며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한다.

“사.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를 신설하며 제한기간은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서 붙임서류 “1.공사 입찰유의서 1부”를 “1.입찰유의서 1부”로 하며 “2.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를 “2.계약 일반조건 1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서 붙임서류 “1.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를 “1.입찰유의서 1부”로 하며 “2.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를 “계약 일반조건 1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용역 표준계약서에서 붙임서류 “1.용역 입찰유의서 1부”

를 “1.입찰유의서 1부”로 하며 “2.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를 “2.계약 일반조건1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정금액 용어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에 대한 적용례) 제7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적용례) 별표 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u>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u>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생략)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13. (생략)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생략) 1. ~ 6.(생략)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u>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u>----- ----- 제42조(입찰무효) (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 ----- -----(- <u>제39조제1항</u>----- -----) -----) 4.~13. (현행과 같음)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현행과 같음) 1. ~ 6.(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u> (신 설) (신 설)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2. <u>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u> <u>가.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u> <u>나.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u> 3. <u><삭 제></u>
<u>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u>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생략) 1.~4.(생략)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u>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u>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u>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② ---- ----- -<u>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u>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현행	개정(안)
3.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가.나.(생략)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라. 나목의 부정합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 여 붕괴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에 따른 중 대재해를 야기한 자	<신설>	11개월 이상 1년1 개월 미만
바.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 여 시설물의 붕괴를 야기한 자	<신설>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사.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 여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	<신설>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별지 제7호서식]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 주 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계 약 내 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현 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그 밖 의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1.5>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 품 일	. . . ~ . . .
	납 품 장 소	
	그 밖 의 사 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10 -					

용역 표준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서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 . ~ . . .
	위치	
	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자치단체의 장 또는 - 11 -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